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-
2018년 예산집행 지침 변경(안)

2017. 1. 17. 예산팀

-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원 예산 집행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에 대비하고자 함

□ 변경대상 및 내용

1. 행사홍보비, 회의운영비(토론회, 학술세미나 등)

구분	현행					변경(안)		
연구원 차원의 토론회, 세미나 수당	○ 자급기준 - 공무원					○ 자급기준		
	구분	장관	차관	4급이상 (부속이상)	5급이하 (조속이하)	구분	발표자, 사회자	토론자
	1시간 이내	50만원	40만원	30만원	20만원	1시간 이내	40만원 이내/인	30만원 이내/인
	1시간30분이상	75만원	60만원	45만원	30만원	1시간30분이상	60만원 이내/인	45만원 이내/인
	-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등							
	구분	기관장	임원	직원				
1시간 이내	40만원	30만원	20만원					
1시간30분이상	60만원	45만원	30만원					
과제 차원의 토론회, 세미나 수당	○ 자급기준					○ 자급기준		
	구분	발표자, 사회자		토론자		발표자, 사회자		토론자
	1시간 이내	20만원		20만원		30만원 이내/인		20만원 이내/인
	1시간30분이상	30만원		20만원				
※ 연구원 외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학술행사의 경우 위 기준단가 적용					※ 연구원 외부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학술행사의 경우 위 기준단가 적용			

2. 교육훈련비(특강수당)

※ 추후 지방자치인재개발원(구 지방행정연수원) 기준변경 시 변경적용 예정

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: 경비 중 교육훈련비
 외래교육강사의 강사료는 '지방행정연수원' 또는 '서울시 인재개발원' 등의 강사료를 준용하여 편성

□ 시행일자 : 원장 결재 후 즉시